

제407회 임시회  
'23. 3. 16.(목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일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3월 3일
- 회부일자 : 2023년 3월 6일

## 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내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함.

## 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2조)
-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(안 제3조)
-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 규정(안 제4조)
-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### 가. 제출배경

- 도내에서는 22개<sup>1)</sup>의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이들 단체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청소년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부재함.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1조는 ‘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불가결함.

#### <근거 : 청소년 기본법>

**제41조(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)**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  
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이에, 「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」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※ 10개 시·도에서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·운영 근거 마련

- 근거 부재(2) : 충북, 강원

1) 출처: 충청북도 홈페이지 청소년단체 현황(2023.3.6.기준), 붙임 참조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, 본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1조<sup>2)</sup>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안 제2조는 상위 관련 법령인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“청소년단체”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상 문제가 없음.
- 안 제3조는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할 수 있다는 협의회 설립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비영리·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해당하므로, 안 제3조의 협의회 설립 근거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타당함.
- 안 제4조는 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,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,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·연구, 우수회원단체와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,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·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, 청소년 육성을 위한 비영리·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협의회 설립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됨.

---

2) 제41조(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)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또한,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, 이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1조제2항을 준용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5조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0조제1항제9호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활동 중 하나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,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협의회의 공익적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,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으로 도내 청소년단체들의 중심적 역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**참고****충청북도 청소년 단체 현황**

| 연번 | 단체명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 | 한국환경사랑청소년육성연맹         | 법인 |
| 2  |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           |    |
| 3  | 글로벌비전청소년연합회           |    |
| 4  | (사)유스투게더              |    |
| 5  | (사)제천푸른청소년문화센터        |    |
| 6  | (사)중원청소년문화복지센터        |    |
| 7  | (사)두드림 교육공동체          |    |
| 8  | (사)청소년이미래다            |    |
| 9  | 육영아카데미                |    |
| 10 |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           |    |
| 11 |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           | 단체 |
| 12 |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충북지부        |    |
| 13 |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         |    |
| 14 | 청소년폭력예방단 충북지부         |    |
| 15 |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           |    |
| 16 | 한국청소년충북연맹             |    |
| 17 |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           |    |
| 18 | 청주국제교류회               |    |
| 19 | 참사랑상담원                |    |
| 20 | (사)충북기독교청소년협회         |    |
| 21 |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문화공동체 그루터기 |    |
| 22 | 대한청소년보호순찰대            |    |

\*출처 : 충청북도 홈페이지(2023.3.6.현재)